「증권대차중개에 관한 약관 (대여자용)」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3조(용어의 정의) 5."**대차풀**"이란 대여자가 대여중개약정을 한 계좌의 종목 중 대여가 가능한 대상증권의 총집합을 의미한다.	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5."**대차풀**", "**리테일풀**"이란 대여자가 대여중개약정을 한 계좌의 종목 중 대여가 가능한 대상증권의 총집합을 의미한다.	리테일풀 용어정의 추가
없음	제13조의2(리테일대여수수료 지급기준) ① 회사는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거래유형별로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야 한다. 1. 신규 대차거래 체결에 활용된 경우 : 회사가 체결한 대여수수료율의 비율 이상. 다만, 인덱스 바스켓 구성에 활용된 경우 개별 구성 종목별로 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. 2. 기차입한 리테일풀 주식의 교체에 활용된 경우 : 교체전 적용되었던 수수료율의 일정 비율 이상 3. 기차입한 외부 기관 중도상환 요청에 증권이 활용된 경우 : 교체전 수수료율의 일정 비율 이상 4. 기차입한 외부 기관 중도상환 요청 외 증권이 활용된 경우 : 시장 요율을 감안하여 교체 전 수수료율의 일정 비율 이상 5. 회사 취득 수수료가 낮거나 없는 특수한 경우 : 회사가 정하는 최저 보장수수료율	신설